

#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I 유형)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

## <주요 개정사항>

- 재직인정기업 기준 명확화 및 의무재직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, 건전성 제고

### ① 사업운영 관련

구분	'23학년도	'24학년도
재직인정기업 매출기준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불필요</li> </ul>	
	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	해당문구 삭제
재직인정 제외기업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무상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인정 제외(1유형과 기준 통일)</li> </ul>	
	<신설>	법인이 아닌 종교단체
부모기업 사전 확인절차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직인정기준에 대한 심사 투명성 강화 필요(감사 지적사항 반영)</li> </ul>	
	부모기업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부모 성명 기재	부모기업 재직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징구

### ② 장학생 의무재직 관련

구분	'23학년도	'24학년도
의무재직 심사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허위 작성 사례와 근로소득세 미납 사례 발생에 따라 의무재직 심사 기준 강화</li> </ul>	
	<신설>	·(취업) 재단이 정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근로 사실·기간 확인 ※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예외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세 증빙서류 징구 ※ 재직 증빙서류는 '24년 이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
	<신설>	·(창업) 신규장학생 선발 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6개월 평균 매출이 월 713,102원 초과 시 재직 인정 ※ '24년 이후 신규장학생 선발 시에만 적용

## II. 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

### ① 사업 개요

#### 4. 재직 인정 기업 관련

'23학년도	'24학년도	관련
②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	②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	p.5
<재직 인정 제외 기업 표> <b>신설</b>	<재직 인정 제외 기업 표> <b>■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</b>	p.6
<재직 인정 제외 기업 표> <b>■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</b> - 단,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(중소·중견 기업에 한함)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	<재직 인정 제외 기업 표> <b>■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</b> - 단,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<b>국내법인은 재직 인정 기업에 포함</b>	p.6

### ② 장학금 신청

#### 2. 학생신청 - 신규장학생 - ③장학금 신청

'23학년도	'24학년도	관련
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(포기)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	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(포기)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<b>※ 학생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신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, 소속학교 오기재 및 허위기재 탈락처리</b>	p.9
<신청 증빙 서류> <b>신설</b>	<신청 증빙 서류> <b>(신설) 부모기업 재직 여부</b> ▶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·초본 인정 불가) <b>(신설) 영업 활동 증빙(※개인사업자만 해당)</b> ▶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신규 신청 시만 해당)	p.9

#### 4. 수납원장 등록 학생신청 - 신규장학생 - ③장학금 신청

'23학년도	'24학년도	관련
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별 정보입력 :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, 장학금정보, 등록금정보, 수납계좌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, 정부.지방자치단체.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한 학생 부담분만 입력	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별 정보입력 :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, 장학금정보, 등록금정보, 수납계좌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학과 및 <b>산업체위탁학과 학생</b> 등록금액 등록 시, 정부.지방자치단체.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<b>포함하여 등록금액 입력</b> <b>-단, 정부.지방자치단체.기업체 지원분은 수납원장 내 교외장학금에 입력 필수</b>	p.13

#### ④ 심사 및 장학금 지급

##### 1. 신규 장학생 심사 - (1)대학 심사 -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 - ⑥현 재직 요건

'23학년도	'24학년도	관련
<항목별 심사 서류>  <b>신설</b>	<항목별 심사 서류>  <b>(신설) 매출액</b> <b>▶ 6개월간 매출액 평균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(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적용.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713,102원)</b>	p.15
<항목별 심사 서류>  <b>신설</b>	<항목별 심사 서류> <b>부모기업(재직 인정제외 기업)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조</b>	p.15

##### 2. 계속장학생 심사 - (2)심사요건 재확인(이의신청)

'23학년도	'24학년도	관련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요건 재확인 요청 방법  <input type="checkbox"/> (요청기간) 대학 심사결과 공지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	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요건 재확인 요청 방법  <input type="checkbox"/> (요청기간) <b>재단</b> 심사결과 공지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	p.20

## 5 장학금 반환 및 환수

### 1. 장학금 반환 - (1)장학금 반환 사유 - □ 반환 사유 및 금액

'23학년도	'24학년도	관련
<p>④ 교육지원대상자*를 동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대학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지원금 전액 반환</p> <p>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</p>	<p>삭제</p>	<p>p.31</p>
<p>&lt;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&gt; 표</p> <p>○ 환수 약정을 통한 상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: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</li> <li>-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: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한 후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하여 상환</li> </ul> <p>※ 환수약정 체결 이후, 의무재직 상시 보고는 불가함</p>	<p>&lt;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&gt; 표</p> <p>□ 방법</p> <p>○ 환수 약정을 통한 상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: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</li> </ul> <p>※ 환수 기한: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1년 이내 환수단, 환수 약정 체결은 환수 기한 내 체결해야하며,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1년 이내 환수가 완료되어야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: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한 후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하여 상환</li> </ul> <p>※ 환수약정 체결 이후, 의무재직 상시 보고는 불가함</p>	<p>p.31</p>